<PSNM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규정>

제정 : 23. 04. 26

제 1 장 일반원칙

제 1 조(목적)

PSNM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규정(이하 'CP 규정'이라 한다)은 구성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준수 의무, Biz. Partner 와의 관계에서의 분쟁 방지 의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Compliance Program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본 원칙)

CP 규정은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관련 일체의 행위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반부패를 관리하기 위해 적용되며, 본 규정에 반하는 방침 또는 규정이 있을 경우 CP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제 3 조(용어 정의)

CP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P"란 "Compliance Program"의 약자로 Compliance Risk (BR Risk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점검·진단, Compliance 교육, 보상 및 제재 등 회사가 Compliance 를 실천하기 위하여 이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Compliance"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제반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사전적·상시적·자율적으로 행해지는 준법감시체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Biz. Partner 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실적 분쟁 및 관련 Risk 에 대한 예방 활동을 포함한다.
3. "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대리점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각종 법규를 말한다.
4. "Biz. Partner"란 회사와 각종 계약관계 또는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통신사, 판매점,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 협력사 등을 일컫는 것으로서, Partnership 기반의 건전한 사업환경 조성을 통해 동반성장해야 할 대상을 의미한다.

5. "BR Risk"란 회사와 Biz. Partner 간 협업 전 과정(선정, 협업, 퇴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실적 분쟁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6.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본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CP 운영에 대한 총괄책임자로 회사가 임명한 자를 지칭한다. .
7. "공정거래 부서"는 CP 운영과 관련한 실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8. "구성원"은 PSNM 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뜻한다.
9. "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 부서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판단한 행위로써, 행정기관, 사법기관, 기타 제 3 자에 의한 문제 제기 및 판단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 부서가 직접 검토하여 법 위반 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0. "자율준수편람"은 구성원들에게 CP 의 이해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 등을 위하여 CP 운영 기준, 절차, 사례 등 CP 관련 일체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한 지침서를 뜻한다.
11. "인센티브"는 CP 를 모범적으로 준수, 제보, 제안하여 PSNM, 고객, BP 등 사이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구성원 또는 부서에 제공하는 혜택을 뜻한다.

제 2 장 조직 및 업무

제 1 절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등

제 4 조(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최고경영자는 효과적인 CP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지식이 풍부하거나 CP 를 포함한 준법경영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 5 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CP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사권
2. 위 1 호에 해당하는 구성원에 대한 시정 요구 권한
3. 위 1 호에 해당하는 구성원 중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
4. 기타 CP 의 운영에 필요한 권한으로써 최고경영자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

제 6 조(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Compliance 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천명 및 CP 기준과 절차의 대내외 공표
2. CP 의 실행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 대한 감독
3. CP 의 운영계획 및 실적에 대한 보고
4.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당국과의 공식적인 대화채널로서의 역할
5. 구성원의 제반 법규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개선·시정 요구 및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요청
6. Compliance Risk 점검·진단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7. CP 의 세부 실행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배포, 보완
8. 규제기관의 수·조사 등 법적 절차에 대한 이행 및 협조, 관련 구성원에 대한 협조요청 및 가이드 제시

제 7 조(공정거래 부서의 업무)

① 공정거래 부서 소속 직원은 제 6 조 각 호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② 공정거래 부서는 CP 의 운영,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등 Compliance 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2 절 구성원의 역할과 의무

제 8 조(구성원의 공정거래 준수, 반부패 방지 준수 의무)

구성원은 모든 경영활동이 사회적·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의무를 준수한다.

1. 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 : 구성원은 다른 사업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통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 조장하는 등 다른 사업자와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조합 등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지 아니한다.
2.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 임직원은 거래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기존 BP 에게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새로운 거래를 원하는 BP 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BP 간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회사의 상품·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부당하게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라. 거래상대방에게 회사의 상품·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마.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거나,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판매점, BP 등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그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사.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 구성원은 통신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거나 고객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 법규 및 규정의 준수

가. 구성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고객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표시광고행위·하도급거래·전자상거래·약관거래·중소기업과의 거래 등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구성원은 전항의 법규 이외에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법적 위험과 관련된 국내·외 제반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구성원은 회사의 윤리규범, 문서관리규정 등 각종 사규 및 내부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구성원은 제반 법규 또는 본 규정 등의 위반행위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이를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구성원은 규제기관의 수·조사 과정에서 자율준수관리자의 가이드에 따라 법적인 절차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방해 또는 증거인멸 행위로 오인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BR Risk 방지

가. Biz. Partner 를 동등한 관점에서 대하고, 보조자나 수행자가 아닌 동반자적 관점에서 진정한 Partnership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통하여 Biz. Partner 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상호 신뢰 구축에 힘쓴다.

다. 관련 법규 준수 외에도 규제시각이나 사회적 눈높이까지 감안한 Biz. Partner 와의 협업 및 BR Risk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라. Biz. Partner 와의 협업 전 과정에 걸쳐 가급적 서면 위주(계약서·공문·이메일)로 업무처리 한다.

마. Biz. Partner 와의 이슈·분쟁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Compliance 부서에 신속히 공유·공조를 요청한다.

6. 정보 보호 : 임직원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각종 정보, 문서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7. 뇌물 및 부패방지 의무 준수

가. 관련 법령 준수 :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을 준수 한다.

나. 금품 : 어떠한 명목으로도 Biz. Partner, 구성원, 고객,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아니되며, 공무원에게 그의 업무 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해서도 아니된다.

다. 접대 : Biz. Partner, 구성원, 고객, 이해관계자와 접대를 주고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주고 받을 수 있다.

라. 금전거래 :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되며, 향응 기타 개인적인 편의 제공, 불법적인 금융거래 등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

마. 청탁/추천 : 구성원 또는 외부인을 통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청탁/추천을 하지 않으며, 청탁/추천을 받은 경우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바. Biz. Partner 와의 상호존중 :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경영정보, 기술자료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9 조(Risk 사전협의)

①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수행할 경우 공정거래 부서의 사전검토 및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동종업계(경쟁사, 대형 대리점, 판매점 등) 관계자의 접촉, 계약·구매·입찰 사무, 타 계열사와의 거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다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신청 관련 자료 작성과 제출
2. BR Risk 여부 및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
3. 위 각 호 이외에 구성원 스스로 공정거래, 반부패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의 수행

② 구성원은 Risk 사전협의 시 공정거래 부서에 PS.NET 법무검토 요청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하며, 공정거래 부서는 Risk 사전 협의 전 협의 대상 업무인지 여부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적용 여부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0 조(내부고발)

① 구성원은 법령 위반, 반부패 등을 하였거나 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였을 경우 이를 공정거래 부서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즉시 제보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명백히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제보하지 않거나 같이 행위를 한 경우 법 위반 행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제 3 장 CP 의 운영 등

제 1 절 자율준수 의지의 천명

제 11 조(자율준수 의지의 천명)

①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CP 도입 및 운영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최고경영자 본인을 포함한 구성원의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
② 위 1 항에 따른 공표 및 의지 천명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표 및 의지 천명을 위하여 구성원 대상 CP Letter, 사내 인트라넷 활용 등, BP 는 윤리준수서약서 등 활용,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표한다.

제 2 절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교육

제 12 조(자율준수편람)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구성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내 인트라넷 등에 게시한다.

제 13 조(구성원에 대한 교육)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CP 관련 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의 위반 가능성이 높거나 BR Risk 유발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Risk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신입 및 경력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교육을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절 내부감시체계

제 14 조(점검, 결과보고 및 조치)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제반 법규 및 본 규정의 준수여부 등 Compliance Risk 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시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한 질문 및 자료 요청에 의한 증빙, 검증을 통해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제반 법규 및 본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윤리경영 부서에 의뢰하여 확인을 구하거나 윤리경영 부서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정기/수시 점검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개선 권고 조치, 재발방지 교육, 확인 점검, 위반 행위자 제재 권고 등 Compliance Risk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구성원이 제보한 내용이 법 위반 예방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 제 16 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 4 절 제재 및 인센티브

제 15 조(법 위반 행위 구성원에 대한 제재)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해당 구성원에 대한 시정요구, 구두·서면 경고를 할 수 있다. 시정요구 또는 구두·서면 경고 등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반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또는 법 위반 정도가 커서 회사에게 심각한 명예실추 또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징계규정 등 관련 사규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해당 구성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구성원이 법 위반 행위임을 인지하거나, Risk 사전 협의 대상 임에도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공정거래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업무를 강행한 경우
2. Compliance Risk 점검 등을 통해 담당부서 및 임직원의 법률 위반 행위가 발견 된 경우
3.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개선,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4. 구성원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PSNM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검찰 고발 및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손해의 배상 등 금전적 피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위 1 호 내지 4 호 행위로 인해 제재 조치를 받은 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부서가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우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과정에서 위 1 항에 따른 행위 이외의 공정거래 법규 위반 행위 또는 CP 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경우로서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구성원의 상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 1 항 내지 2 항에 해당하는 구성원과 그 구성원의 상급자는 동일한 책임을 진다. 다만 상급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및 CP 참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소명하여 이를 인정받은 경우 이를 면책할 수 있다.

제 16 조(구성원 인센티브)

자율준수관리자는 CP 활용을 통한 법 위반 예방 및 법률 비용 감소에 기여한 구성원 및 CP 교육 실적 우수 구성원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CP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관련 사규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 4 장 기타

제 17 조(문서관리)

공정거래 부서는 CP 운영에 관한 문서 일체를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CP 와 관련된 문서 중 보관이 필요한 문서를 대상으로 하여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분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 18 조(권한의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 또는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